의안번호	2209597
의 뢰 인	민형배의원
회 답 일	2025.4.30.
추계번호	25D1814

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 (대통령 궐위 등에 의한 선거의 당선으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) 신설	-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은 60일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함 -국정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7조 (대통령 궐위 등에 의한 선거의 당선으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국정인수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17조)

○ 개정안은 「대한민국헌법」 제68조제2항[1]에 따라 실시된 선거의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「공직선거법」 제14조제1항[2] 단서에 의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은

1) 「대한민국헌법」 제68조 ① (생 략)
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.

2) 「공직선거법」 제14조(임기개시) ①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. 다만,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.
②~③ (생 략)

60일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

○ 가장 최근(2022년)에 설치되었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우,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 및 24명의 위원, 전문위원·실무위원 159인 등 총 185명으로 구성되었으며, 하부조직으로는 기획조정, 외교안보, 정무사법행정, 경제1, 경제2, 과학기술교육,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위원회와 대변인실 및 행정실을 두고, 특별위원회로 국민통합위원회,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,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, 취임준비위원회를 설치하였음

○ 또한 「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」 제8조[3]에 따라 관련 경비는 행정안전부의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, 27억 500만원을 배정받아 26억 7,800만원을 집행하였음

[참고자료]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황

○ 다만, 동 경비는 임기개시 이전에 설치되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예산 규모로, 개정안의 국정인수위원회의 경우 대통령 임기개시 이후에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개정안에 따른 국정인수위원회에 준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, 개정안에서 국정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의 규모 및 인적구성, 활동범위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3) 「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」 제8조(예산지원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.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·비품·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,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.
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.go.kr

[참고자료]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황

❑ 위원회 구성

구분	계	인수위원	행정실장, 부실장	전문위원			실무위원		
				당	정부	외부 전문가	당	정부	외부 전문가
계	185	26	2	28	30	24	36	30	9
위원장	1	1							
부위원장	1	1							
기획조정분과	21	3		3	3	3	5	3	1
외교안보분과	20	3		3	5	1	4	3	1
정무사법행정분과	24	3		3	6	1	4	6	1
경제1분과	22	3		1	4	6	3	4	1
경제2분과	21	4		1	5	3	1	4	3
과학기술교육분과	22	3		1	4	6	4	3	1
사회복지문화분과	25	4		3	3	4	7	3	1
대변인	13	1		6			5	1	
행정실	14		2	7			2	3	
코로나비상대응특위	1						1		

※ 국민통합위원회 :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위원 20명
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: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위원 16명
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: 위원장 1명, 위원 12명
기획위원회 : 위원장 1명, 위원 35명
자료: 「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」(2022.6.)

❑ 예비비 결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, %)

구분	예산액(A)	집행액(B)	불용액(A-B)	집행율(B/A)
금액	2,706	2,678	27	98.9

자료: 「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」(2022.6.)

❑ 사무실 사용 현황

구분	면적	용도
금융감독원 연수원	2,349m^2	당선인 집무실, 위원장님, 부위원장실, 기획위원장실, 기획조정분과, 경제1분과, 경제2분과, 공동기자회견장 등
한국금융 연수원	1,400m^2	과학기술교육분과, 청와대이전TF, 사회복지문화분과, 국민통합위원회 등
정부서울청사	384m^2	취임준비위원회, 국민제안센터 등

자료: 「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」(2022.6.)